조선후기 量案의 작성과 활용*

박 현 순**

1. 머리말
2. 量案과 行審冊
  1) 量田과 양안 작성
  2) 行審冊의 작성과 그 주체
3. 토지 소유주의 양안 활용
  1) 궁방의 양안 등출
  2) 개인의 양안 등출
4. 맺음말

1. 머리말

量案은 量田에 의해 작성된 토지대장이다. 양안이라는 명칭 이외에 '田案', '導行帳', '打量成冊'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같은 이름이 붙여진 책에는 양전을 통해 작성된 군현양안과는 다른 범주의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궁방이나 아문, 개인, 서원, 향교, 문중 등에서 소유 토지의 필지별 정보를 기록한 책들이 그것이다. 이런 자료들은 양안에서 소유지나 수세지에 해당하는 필지를 뽑아 기록한 등출 양안으로, 양안에서 파생된 또 다른 형태의 양안이다.

등출 양안은 등출 주체나 목적, 작성 단위가 다양하며, 활용 목적에 따라 군현양안을 그대로 등서한 것도 있고, 일부 항목을 가감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양안이 등출된 것은 곧 양안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조선후기 양안의 작성과 등출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양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양안 자료는 그동안 조선후기 사회 경제사 연구의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각 자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나마 경자양안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1] 등출 양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

만 양안의 등출은 양안의 실제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양안의 활용이란 측면에서는 등출 양안의 작성 과정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안의 등출과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부세 행정에 이용된 행심책에 대한 연구가 있다.[2] 그러나 아직은 한 두 종류의 자료를 활용하였을 뿐 많은 논의는 목민서에 의존하고 있다. 현전하는 행심책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그 가운데 자료의 성격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발견된다. 따라서 행심책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전하는 자료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전하는 양안 자료는 작성 주체나 수록 토지에 따라 작성 과정이나 그 성격이 상이하다. 따라서 양안 자료의 작성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양전을 통해 작성된 군현별 양안은 일반양안, 부세 운영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양안 전체를 등서한 양안은 행심책으로 분류하고, 궁방, 개인 등이 소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등서한 양안은 궁방양안, 개인양안 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류에 기초하여 현전하는 양안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양안의 작성과 활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量案과 行審冊

1) 量田과 양안 작성

조선은 개국 직후부터 양전을 시행하여 군현별 양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 도단위로 均田使나 量田使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경자양전 이후에는 영조대 전라도의 査陳量田을 필두로 도단위의 양전 대신 군현을 단위로 하는 邑量田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2-A00005)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宮嶋博史, 1991『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 오인택, 2000「경자양전의 시행조직과 양안의 기재형식」『역사와 현실』38, 한국역사연구회(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2008『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재수록).

2) 이영훈, 1995「16세기말·17세기초 경상도·평안도의 행심책 二例」『고문서연구』7, 한국고문서학회 ; 최윤오, 2000,「조선후기의 양안과 행심책」『역사와 현실』58, 한국역사연구회(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2008『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재수록).

을 주로 시행하여 읍양안을 작성하였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읍양안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아래에서는 먼저 현전하는 경자양안과 읍양안을 통해 일반양안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경자양전은 각도를 좌우도로 나누어 균전사를 파견하였다. 균전사는 도내를 순행하며 순차적으로 군현별 양전을 시행하고 군현단위로 작성된 양안을 최종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경자양안은 균전사의 관할 구역별로 작성 방식이 통일되어 있으며, 명칭도 경상도는 '庚子改量田案', 전라도는 '己亥量田導行帳'으로 통일되어 있다.[3)]

군현단위에서의 양전은 면단위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지역이 넓은 경우 한 개의 면을 1道, 2道 또는 上道, 下道 등으로 나누어 동시에 양전을 진행하였으며, 그 아래에 다시 1作, 2作 등 '作'을 나누어 양전 단위를 세분화한 경우도 있다. 全州 南面의 경자양안을 보면 남1도 1작, 남1도 2작, 남2도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都廳算士와 打量都監品官을 두어 한 개의 면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양전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양전의 결과로 작성된 양안도 면단위로 작성되었다. 양안은 野草, 草案, 正案 등 3단계의 초안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양안으로 완성되었으며, 끝에는 面摠을 수록하였다. 즉, 경자양안은 군현단위로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양전과 양안 작성의 기초단위는 面이었다. 각 양안에는 최종 책임자인 균전사의 수결이 실려 있으며, 면양안을 종합한 군현별 양안의 마지막 권에 邑總이 실려 있다. 면단위의 양전과 양안 작성, 군현 단위의 종합 및 검토, 균전사의 결재로 이어지는 과정은 면-군현-도로 체계화된 행정단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만 천자문 순서의 자호를 붙이는 방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경상도 남해, 예천, 전라우도 고산 등은 군현단위로 일괄하여 자호를 매긴 반면 전라좌도의 화순, 능주 등은 면별로 따로 자호를 매겼다. 전주의 경우 면단위로 천자문을 붙인 경우와 몇 개 면을 통합하여 자호를 매긴 경우가 함께 나타난다.[5)] 자호가 천자를 넘을 경우는 兩天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였다.

경자양안의 기재 양식은 字號, 지번, 양전방향(犯向), 田品, 田形, 地目, 長廣尺數, 결부수, 四標, 진기여부, 主名의 순으로 통일되어 있다. 다만 그 가운데 몇가지

3) 경자양전의 시행과 양안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宮嶋博史, 앞의 책 및 오인택, 앞의 논문 참조.
4) 『全羅右道全州府己亥量案導行帳』(奎 15035)
5) 전주부의 경자양안인 『全羅右道全州府己亥量案導行帳』(奎 15035)를 보면 부동면, 부남면, 부서면, 부북면, 서면, 이동면, 동면, 한량소면, 이동면은 天字에서 시작하고 나머지 면은 앞의 자호에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天字에서 시작된 이동면의 자호는 이남면, 이서면, 이북면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면의 자호는 남면으로 연결되고 서면의 자호는 북면으로 연결된다.

차이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주명의 기재 방식에서 나타난다. 경상도는 '主'라는 명칭 아래에 舊主와 今主를 나누어 기재하고 금주의 경우 직역을 부기하였다. 반면 전라좌도는 '主'라는 명칭 아래에 인명을 기재하였으며, 전라우도는 인명만을 기재하였다.[6]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파악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즉, 경자양안은 기재 양식 상 지역별로 몇가지 차이는 있으나 파악 내용은 통일되어 있다.

경자양전 이후 읍양전의 결과로 작성된 양안은 필지별 정보의 기재 순서에서 간혹 경자양안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7] 고종 8년(1871) 언양현 양안의 경우 경상도 경자양안과 비교해 보면 범향과 지번, 주인명과 진기여부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 주명 기재도 인명으로 간략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경자양안과 차이가 없다. 또 언양현 남상동 양안의 경우 마지막에 수령의 수결 외에 觀察使의 수결과 都事의 수결란이 있어서 읍양안의 경우도 최종적으로 관찰사의 확인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양전을 통해 작성된 일반양안은 戶曹와 監營, 郡縣에 각기 한부씩 보관되었다. 언양현 남상동 양안의 경우에는 戶曹 보관용 양안도 현존하여 읍양안도 동일하게 세 곳에 보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그런데, 고종 8년(1871) 언양현 양안에는 面量案 외에 洞量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언양현 양안 9종 10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南三同(삼동면) 양안 1종 2책과 北三同(하북면) 양안 1책은 면양안인데 비해 中南面 양안 7책은 동양안이다. 언양현 양안은 군현단위로 字號를 붙였는데, 이를 자호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

---

6) 자호의 경우 경상도와 전라우도는 ○字로 통일되어 있으나 전라좌도는 ○字로 된 지역도 있고, ○字丁으로 기재된 지역도 있다. 또 경상도는 5결 1자의 원칙을 준수하면 반면 전라도는 좌도와 우도 공히 5결 1자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 경상도와 전라우도는 지번을 第一, 第二의 형식으로 붙인 반면 전라좌도는 첫 번째 필지는 第一로 기재하였으나 두 번째 필지부터는 숫자만을 기재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오인택, 앞의 논문.

7) 조선후기 읍양전의 시행과 읍양안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정승진, 1999「『영광군서부면개량안』의 분석」『대동문화연구』3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왕현종, 2001「18세기 후반 양전의 변화와 시주의 성격 : 충청도 회인현 사례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41, 한국역사연구회.

8) 『慶尙道彦陽縣南三洞田畓量案』(奎 15008)

9) 『慶尙道彦陽縣北三同田畓結量案』(奎 15013). 『경상도언양현북삼동전답결양안』은 현재 2책이 있는데, 수록된 자호와 필지별 정보가 동일하다. 이중 <奎 15013>은 표지에 '戶曹'로 기재되어 호조보관용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책의 모서리에 '彦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해 <奎 15008>은 책모서리에 '南三同'이라고 기재되어 언양현 보관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 ]은 表題로 내제를 기준으로 한 서명과 다른 경우에만 기재하였다. < >는 소장기관에서 임의로 붙인 제목을 가리킨다.

표 1 고종 8년(1871) 언양현 읍양안의 구성

번호	서명	도서번호	지역	자호	자수	책크기	행수	작성자
1	慶尙道彥陽縣北三同田畓結量案	奎 15016	下北面	羌－欲	71	48×57cm	21	결락
2	<慶尙道彥陽縣田畓量案>	奎 15014	中南面 洞名 미상	川－思	12	48.4×29cm	10	결락
3	慶尙道彥陽縣平里洞德員禮員田畓打量冊	奎 15017	〃 平里洞	言－愼	9	46.6×30cm	8	官
4	慶尙道彥陽縣雙水亭洞田畓結大帳	奎 15010	〃 雙水亭洞	愼－甚	10	47.2×28cm	10	官
5	慶尙道彥陽縣華山洞田畓結正案[華山洞田畓結行審冊]	奎 15018	〃 華山洞	無－政	10	48×27.4cm	10	官
6	<慶尙道彥陽縣田畓量案>	奎 15009	〃 洞名 미상	(政)－和	19	48.4×29cm	11	결락
7	慶尙道彥陽縣加川洞田畓改量野草[象川洞田畓改量野草]	奎 15019	〃 加川洞	(睦)－猶	20	50.4×31.6cm	11	官
8	慶尙道彥陽縣中南面方基洞田畓結打量正案[彥陽中南芳基洞田畓結卜正案冊]	奎 15015	〃 方基洞	猶－分	16	48×27.7cm	8	官
9	慶尙道彥陽縣南三同田畓量案[慶尙道彥陽縣南三同田畓結量案]	奎 15013	三同面	切－靈	76	48.2×56cm	21	通訓大夫慶尙道行彥陽縣鑑兼慶州鎭管兵馬節制都尉李
10	<慶尙道彥陽縣南三同田畓量案>[彥陽縣南三同田畓結量案]	奎 15008	〃	切－(靈)	76	48.2×56cm	21	(〃)

『여지도서』에 따르면 언양현은 上北, 中北, 下北, 上南, 中南, 三同의 6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전하는 언양현 양안은 그 중 3개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호 순서를 따라가 보면 첫부분에 해당하는 天－戎 119자(상북면, 중북면

추정)는 빠져 있고, 그 다음이 하북면 면양안(71자)이며, 그 뒤 다시 難-盛까지 82자(상남면 추정)가 빠지고 중남면 동양안 7책과 삼동면 면양안으로 이어진다. 삼동면 양안 끝에 邑總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1)]

언양현 양안 10책은 기재 양식이 동일하며, 작성 시점도 대부분 신미년, 혹은 同治 10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고종 8년에 함께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북면과 삼동면 양안은 면양안인데 비하여 중남면 양안 7책은 동양안이라는 차이가 있다.

언양현의 면양안과 동양안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책의 크기를 보면 면양안은 세로가 48cm, 가로가 56~57cm로 가로가 긴 형태다. 이에 비해 동양안은 세로가 46.6~50.4cm, 가로가 27.4~31.6cm로 세로가 긴형태이며, 면양안과 세로 길이는 비슷하지만 가로 길이는 절반 가량 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안마다 크기 차도 심하다.

일반양안의 크기를 보면 경자양안의 경우 경상도는 대개 세로 63~67cm, 가로 64~70cm로 가로가 더 긴 형태이며, 전라도의 경우 세로 59~63cm, 가로 45~51cm로 세로가 더 긴 형태다. 읍양안의 경우도 울산 양안인 『蔚山府府二洞田結大帳』은 68×70cm, 영광 양안인 『全羅道靈光郡西部面改量案』은 61×46cm로 경자양안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광무양안은 이에 비해 크기가 크게 줄어 들기는 하였지만 역시 경상도는 가로가 더 길며, 전라도는 세로가 더 긴 형태다.[12)] 즉, 지역별로 양안의 형태와 크기가 관행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언양현의 면양안은 크기나 가로 세로의 비율에서 모두 경상도 양안의 관행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안은 가로의 길이가 그 절반 정도에 그쳐 관행에서 벗어나 있다.

또 면양안은 매면에 21행을 수록하였지만 동양안은 책에 따라 8행, 10행, 11행으로 행수가 다르다. 따라서 면양안은 규격화되어 있지만 동양안은 통일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명의 경우에도 면양안은 田畓結量案으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만 동양안의 경우 田畓打量冊, 田畓結大帳, 田畓結正案, 田畓改量正案, 田畓結打量正案 등 책마다 서명이 다르다. 또 작성자를 보면 면양안은 '通訓大夫慶尙道行彦陽縣鑑兼慶州鎭管兵馬節制都尉李'라고 하여 수령의 직함을 모두 썼지만 동양안의 경우 '官'이라

11) 언양현 양안의 구성에 대해서는 규장각 해제 및 宮嶋博史, 1996 「量案における主の性格」『論集朝鮮近現代史 : 姜在彦先生古稀記念論文集』 東京 : 明石書店 참조.

12) 광무양안은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는 대개 가로가 길고, 강원도, 전라도는 세로가 더 길다.

고만 기록하였다. 따라서 면양안은 군현단위로 통일성을 기한 양안이지만 동양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양안의 성격은 무엇이었을까? 동양안의 내제를 통해 확인되는 서명 중에는 野草, 正案 등 양전의 과정과 관련된 서명이 있다. 그 중 野草로 기재된 가천동 양안의 경우 주인란에 빈틈없이 붉은 도장이 찍혀 있을 뿐 아니라 주인명도 실명을 기재한 삼동면 양안과 달리 奴名(戶名)을 기재하여 초안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화산동과 방기동의 경우 내제가 正案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인명도 실명을 기재한 정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13)]

이처럼 동양안은 그 사이에서도 성격이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되지만 그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다. 즉 野草, 正案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 양안 작성의 중간 단계에서 작성된 양안이라는 점이다. 경자양안의 작성 과정에 비추어 보면 언양현에서는 동단위로 正案을 작성한 후 이를 종합하여 면양안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양안이 당초에 洞을 단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방기동 양안에는 洞已上도 기재되어 있어서 동이 파악의 단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

전통적으로 양전은 면을 단위로 시행하고 양안도 면을 단위로 작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언양현에서는 양전의 단위가 洞이었으며, 양안의 초안이나 정안도 동을 단위로 작성되었다. 이처럼 洞을 단위로 양안을 작성한 것은 18세기 이후 면리제가 정착되고 洞이 공동납의 단위로 기능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2) 行審冊의 작성과 그 주체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듯이 일반양안은 일체의 첨삭없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실제 양안을 활용할 때에는 양안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謄出하여 사용하였다. 그 중에는 행심책처럼 부세 운영을 위해 특정지역의 양안을 등출한 경우도 있고 궁방이나 군영·아문, 개인 등이 소유지나 수세지에 해당되는 필지만을 등출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量案'이나 '打量成冊', '田案' 등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양전을 시행하여 자호와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양안에서 일부 내용을 등출하였다는 점에서 양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양안은 '등출양안'이라

13) 宮嶋博史, 앞의 논문(1996).

14) 방기동의 도이상은 전답 58결 59부 4속이다. 『慶尙道彥陽縣中南面方基洞田畓結打量正案』(奎 15015). 동단위의 도이상이 기재된 경우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진주 『奈洞里大帳』에서도 보인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등출 형태의 양안 중에서도 지역 단위로 전 토지를 등출한 행심책과 소유주 위주로 등출한 궁방양안, 아문양안, 개인양안 등은 그 성격이 다르다. 행심책은 부세운영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양안을 그대로 등서하여 기재 사항이 군현단위의 일반양안과 동일하지만 궁방양안 등은 필요에 따라 기재 양식이나 내용을 가감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행심책의 작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양안은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장부지만 실제의 부세행정은 이를 등서한 행심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行審'이란 토지의 작황을 파악하는 과정인데, 이를 위해 양안을 등서한 것이 행심책이다. 행심책은 馬上草, 馬上記, 導行帳付, 踏簿, 災頃及新起成冊 등으로도 일컬어졌다.[15]

행심책에 대해서는 실록이나 牧民書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양안을 등서하여 이용하거나 양안의 초안을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재 내용은 원래의 양안과 동일하며[16] 작황을 기재한 裳紙나 行審帶紙가 붙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양안 자료를 행심책으로 분류하였다.[17] 현재까지 행심책으로 파악된 자료는 아래 <표 2>와 같다.[18]

표 2 조선후기의 行審冊

번호	원서명	작성연도	단위	자호수	裳紙	지역	소장처
1	<永興府憶岐社打量大帳謄書>[내제:憶岐社二道粟山里所付正續及加續幷丙申蓋打量行審冊謄書, 표제:憶岐社二道粟山里所付正續行審冊]	헌종 13(1847)	里	87자	추기	영흥	서울대 규장각

15) 이영훈, 앞의 논문 ; 최윤오, 앞의 논문.

16) 『성종실록』 권8, 성종 1년 11월 2일(병자) "所謂行審冊 乃謄寫導行帳者也 故與導行帳不差一字 其災傷與等第 書諸別標 貼於導行帳各字名下 封藏都會, 待收稅既迄, 還之, 弊可除, 而姦可防, 庶得兩全矣" ; 『量田謄錄』 庚子 4월 21일 "題辭內 所謂草案 各其官留上 每年行審時 輒改其裳紙者 乃通行之規是去乙".

17) 행심책 중에는 일반 양안과 형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 헌종 13년(1847) 『永興府憶岐社打量大帳謄書』(내제:憶岐社二道粟山里所付正續及加續幷丙申蓋打量行審冊謄書)』가 그것으로 지번(추기), 주인명, 양전 방향(범향), 전형, 지목, 결부수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지번이 없고 인명이 처음에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번을 생략한 경우는 평안도 궁방양안에서도 다수 확인되는데, 인명의 경우 결부수와 사표 사이와 같이 중간에 기재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지번을 생략한 것은 고려시대 양안의 遺制로 평가된다. 이영훈, 앞의 글.

18) < >는 소장 기관에서 붙인 서명을 가리킨다. [ ]는 내제나 표제가 서명과 다른 경우 내제나 표제를 기재하였다.

2	<慶尙北道慶州郡量案>[표제:西面]	19세기	面	17자	0	경주	서울대 규장각
3	<慶尙北道慶州郡量案>[내제:見谷同二小冊]	고종 8(1871)	面	24자	0	경주	서울대 규장각
4	<慶尙北道慶州郡量案>[내제:東海面中道洞臺本里一小冊]	고종 20(1883)	里	9자	0	경주	서울대 규장각
5	公洞面中里量案冊	고종 6(1869)	里	7자	0	부여	扶餘·恩山 咸陽朴氏
6	水只谷九政小冊[표제:慶州東二同水只谷九政里員小冊]	戊子	里	11자	0	경주	慶州 蘇亭 慶州李氏
7	沃野面東山洞田畓大帳	미상	洞	3자	0	창녕	부산대학교
8	鳳溪量案	癸卯	洞	6자	0	합천	토지박물관
9	洞中行審[내제:地內面初作行審]	18세기 중엽	洞	11자	0	원주	국사편찬위원회
10	釜山面佐自川員田畓行審[표제:東平面田畓行審第三卷]	고종 7(1870)	員	5자	0	동래	서울대 규장각
11	沙川面新草梁員田畓行審	고종 8(1871)	員	12자	0	동래	서울대 규장각
12	石川員田結元帳付	미상	員	5자	0	미상	조세박물관
13	諸島面加土島行審	고종 8(1871)	島	2자	0	진도	서울대 규장각
14	<田畓案>	미상	미상	미상	0	경주	경주 獨樂堂
15	<田畓錄>	미상	미상	미상	0	미상	영남대학교
16	<量案>	미상	미상	17자	0	(밀양)	국편수집자료
17	田畓等別記[19]	미상	미상	28자	제거	懷仁	고려대학교
18	修正所也村波浪洞田畓案	영조 52(1776)	洞	1자	제거	단양	조세박물관
19	慶尙道彥陽縣華山洞田畓結正案[표제:華山洞田畓結行審冊]	고종 8(1871)	洞	11자	x	언양	서울대 규장각
20	古音達里量案[내제:古音達里洞中量案]	고종 5(1868)	里	22자	x	미상	국사편찬위원회
21	金冬於里大張衿軸	甲辰	里	35자	x	晉州	진양하씨가
22	奈洞里大帳	丙午	里	30자	x	晉州	국사편찬위원회
23	鳳山左曲量案	미상	里	2	x	鳳山	서울대 규장각
24	<行審冊>	미상	미상	미상	별지	미상	서울대 규장각
25	<平安道行審冊>	16세기말	미상	미상	별지	상주	이영훈 논문 소개
26	<尙州行審冊>	17세기초	미상	미상	별지	평안도	〃

19) 『전답등별기』(국사편찬위원회 소장)는 회인현 양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양안 원본이 아니라 양안을 등서한 행심책으로 후대에 裝紙를 제거한 것이다. 『전답등별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왕현종의 앞의 글이 있다.

위의 자료들을 보면 서명은 '行審'인 경우도 있으나 그 외에 '量案', '大帳謄書', '小冊', '大帳'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서명만으로는 양안과 혼동되거나 그 성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심책을 양안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裳紙나 行審帶紙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상지가 붙어있거나 제거한 흔적이 남아 있다.

행심은 과세를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작황이나 진기 현황, 담세자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행심책에 첨부된 상지의 내용도 위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만 조선전기 年分9등제를 시행하던 시기와 年分이 점차 고정되고 比摠制가 시행된 조선 후기의 기재 내용은 차이가 있다. 아직 年分에 비중을 두고 있던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행심책에는 年分을 파악하고 있으며,[20] 조선후기의 행심책에는 대부분 陳田과 경작자의 변동 사항만을 파악하였다. 간혹 파종한 穀物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한 내용을 추기한 경우도 있으나[21] 거의 대부분은 경작자를 파악하는데 그쳤다. 소유자 혹은 경작자는 대개 성을 생략한 名字의 형식으로 된 戶名으로 代錄되어 있다.[22]

그런데, 위의 표에서 행심책이 작성된 지역 단위를 보면 한가지 특징이 더 발견된다.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洞·里 단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면단위로 작성된 경우는 『경상북도경주군양안』의 西面과 見谷同[23] 두 경우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洞·里·員이 작성 단위였다. 이중 員을 단위로 한 동래의 행심책도 지역명인 佐自川員과 新草梁員이 『호구총수』에는 里名으로 실려 있다. 따라서 洞·里를 단위로 행심책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중에는 동래의 『부산면좌자천원전답행심』과 『사천면신초량원전답행심』, 경주의 『경상북도경주군양안[동해면중도동대본리일소책]』처럼 내제나 표제에 卷數가 붙어 있어서 실제로는 면단위로 작성된 행심책의 일부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24] 그러나 많은 경우는 동·리 단위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양안을 등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행심책은 누가 작성하고 사용한 것일까?

행심책은 군현단위에서 부세를 부과할 때 書員이나 面任이 담당하여 작성하는

20) 이영훈, 앞의 논문.

21) 『洞中行審』(국사편찬위원회 소장)에는 파종곡물 등을 기재한 경우도 있다. 최윤오, 앞의 논문

22) 최윤오, 앞의 논문.

23) 見谷同은 경주읍지에는 見谷面으로 되어 있다. 언양현 양안에 하북면이 '北三同', 삼동면이 '南三同'으로 기재된 것을 보면 '同'은 이들 지역에서는 面과 동일한 단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4) 『慶尙北道慶州郡量案』(규장각 소장), <古大 4258.5-17a>의 표제는 「見谷同二小冊」 이며, <古大 4258.5-17c)는 西面 5冊으로 되어 있어서 면단위 행심책의 일부로 추정된다.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앞서 본 것처럼 경주나 동래의 경우 표지나 내제에 책수나 권수를 기록한 경우는 면단위 행심책의 일부로 실제 官에서 작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慶尙道彥陽縣華山洞田畓結正案[華山洞田畓結行審冊]』의 경우 언양현 중남면 양안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제는 '정안', 표제는 '행심책'으로 되어 있어서 관에서 양안 초안을 행심책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실제의 작성자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양반가의 고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서 관에서 작성하여 활용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 가운데 『古音達里量案』의 경우 洞中에서 양안을 등서하였다고 밝힌 서문이 있어서 주목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 동은 海口의 요충 管□한 곳에 치우쳐 있다. 풍속이 질박하고 검소함을 숭상하고 耕織을 업으로 삼아 힘쓴다. 田制에 어두워 매번 재해를 만나 세금을 낼 때는 관에서 온 文簿를 되풀이 하여 보아도 매도하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다. 특별히 깨우칠 방법을 도모하여 府中의 吳使와 깊이 公議를 헤아려 原帳 중에서 1冊을 成出하고, 이름하여 '洞遺'라고 하였다. 이후로 (부세를) 회피하려고 말을 꾸미는 폐단을 면하기를 바란다."[25]

『고음달리양안』을 등출한 이유는 전세를 부과하고 수납할 때 民이 拒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동중에서 관의 문부를 신뢰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양안을 등출하여 비치하고 동중 수세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책을 등서한 인물은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洞中 수세에 관여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동중 양안의 구체적인 등서자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합천 『봉계양안』의 경우가 그 예인데, 작성자는 尊位, 頭民(3인), 書寫로 되어 있다.

조선후기 尊位는 洞中에서 선임된 인물로 洞任과 함께 동중의 부세 업무를 수행하였다. 18세기 말 영월의 사례를 보면 존위가 給災의 분배를 위한 元田의 執卜 등에 참여하였으며, 전세 수납과 관련된 釐正節目도 각동의 상존위가 보관하도록 하여 전세 부과와 수납 전 과정에서 존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26]

---

25) 『古音達理量案』(1868,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蓋本洞僻在海口要衝管□之處 俗尙質儉 業務耕織 茫昧於田制 朦朧於稅政 每値災眚租稅之時則反閱官來簿書 未免罵詈之歎矣 特營其覺寤之方 與府中吳使爛商公議而攷謄於原帳中成出一冊 名曰洞遺 幸免自後遁辭之弊矣 /同治柒年戊辰十二月十二日謄書 蔡/崔"

26) 吳永敎, 2003 「조선후기 洞契의 구조와 운영 : 영월 요선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4, 조선시대사학회.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보면 합천 『봉계양안』은 洞中의 대표인 尊位 등이 부세 운영에 활용하기 위하여 양안을 등서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給災의 분배에도 尊位와 洞任이 참여하였던 사실은 이들이 급재와 부세 부과의 근거자료로 洞中의 行審을 작성하고 보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봉계양안』은 경자양안을 등서한 것으로 매면 2~3장의 상지가 붙어 있다. 상지의 내용은 지번, 戶名을 기본으로 하며 간혹 결부수를 기록한 정도로 매우 간단하다. 다른 행심책의 대부분도 상지에는 戶名, 결부수, 진전 상황만을 간단히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에 비해 원주의 『동중행심』은 기재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다.[27] 이 책은 원본이 아니라 조선사편수회에서 등서한 것이지만 상지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이 책의 원 양안은 양전 후에 다시 陳起 변동을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양안으로 결부수 아래에 浦落, 成川 등의 진전화 양상이 파악되어 있으며, 논의 경우 夜味數도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양안과 달리 자호별로 指審의 이름을, 員을 단위로 已上을 기재하였다.

이에 더하여 상지에는 戶名 외에 防川, 仍川, 今陳 등 추가적인 진전화 상황과 '災', '初不', '行' 등의 당해년의 작황이 있다. 이외에 밭의 경우 파종 작물이 있고, 논의 경우 '初不'과 '行'으로 경작 여부를 기재하였는데, 初不은 '初不付種'을 의미하며 '行'의 경우 이에 대비되어 播種이나 移秧을 시행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전의 경우 '反行'으로 기재된 곳이 있는데 다른 밭과 달리 작물을 기재하지 않아 反畓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중행심』에서 보이는 것처럼 指審을 앞세워 파종 여부와 같은 당해년의 작황을 파악하는 것은 조선후기 행심의 전형으로 파악된다.[28] 나아가 이 책의 내제는 '地內面初作行審'으로 지내면의 첫 번째 지역의 행심책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 행심책은 실제 동중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의 작성자는 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행심책은 『봉계양안』과 마찬가지로 기재 사항이 호명 외에 간혹 결부수나 진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며 당해년의 작황을 파악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동단위로 등서하여 상지를 붙인 양안은 당해년의 작황을 파악한 공식적인 행심책이라기보다는 동 내에서 부세 문제를 조절하고 통제

27) 『동중행심』은 최윤오, 앞의 논문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28) 조선후기 行審과 俵災 시행에 대해서는 이영훈, 1980 「조선후기 팔결작부제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 29, 한국사연구회 및 정선남, 1990 「18, 19 세기 전결세의 수취제도와 그 운영」 『한국사론』 22, 서울대 국사학과 참조.

하기 위하여 戶名을 통해 납세자를 파악한 형태의 행심책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책자들이 班家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은 양반들이 上尊位로서 부세 운영에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행심책'으로 언급되는 자료 중에는 위의 자료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자료들도 있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작성된 「平安道行審冊」, 「尙州行審冊」,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행심책』이 그것이다.

이중 「平安道行審冊」은 필지별로 주인명, 지목, 결부수를 기록한 뒤에 5결을 단위의 연분을 통계하여 기록한 형태다. 「尙州行審冊」은 이와 달리 필지별로 양전방향, 전품, 지목, 결부속, 주인명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연분을 기재하였다. 두 자료 모두 年分을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연분9등제가 시행된 조선전기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필지별 정보를 축약하여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본 행심책들과는 다르다.[29]

한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행심책』은 '七十二田 七束 租七束 徐龍己'와 같이 지번, 지목, 결부수, 세액을 부담할 토지의 결부수, 담세자 등을 간단히 기재하였는데, 책자라기보다는 서류철과 같은 형태로 한 면에 수십 장의 상지가 붙어 있다.[30]

그렇다면 위에서 본 양안을 등서한 행심책과 필지 정보를 축약하여 기재한 행심책은 성격이 동일한 자료일까? 현재 규장각에는 민전 외에 궁방전의 행심책도 소장되어 있는데, 大嬪房의 『靈巖郡露兒島行審』(奎 19000, 奎 25040), 龍洞宮의 『全羅道長興府所在丙午陸畓行審謄書』(奎 18917), 『陰竹郡所在龍洞宮屯田畓打量行審冊』(奎 18296)이 그것이다. 이 자료들은 모두 양안을 등서한 형태인데, 상지는 대빈방의 『영암군노아도행심』 1종(奎 25040)과 용동궁의 『전라도장흥부소재병오육답행심등서』에만 붙어 있다. 상지가 없는 경우는 행심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안을 등서하였으나 실제 활용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례들을 통해 행심책이 양안을 등서한 형태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필지 정보를 축약하여 기재한 자료가 본래 행심책으로 작성된 자료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세 자료는 모두 서명이 없는 자료로 행심책이라는 서명은 수집자나 소장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며, 행심책과 유사한 정보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격은 불분명하다. 하지만 행심책이 양안을 등서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 자료는 행심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양안의 작성에서부터 부세의 부과에 이르는 과정에는 다양한 문서가 작성되었는

29) 이영훈, 앞의 논문(1995).
30) 『행심책』(奎 26605)

데, 자료마다 그 성격이 다르고 지역별로도 사례가 다양하여 현재로서는 이를 일별하기 어렵다. 아마도 앞의 세 자료 역시 그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작성된 자료로 보인다. 이 자료의 의미는 부세 부과와 납세의 과정 속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3. 토지 소유주의 양안 활용

1) 궁방의 양안 등출

궁방양안은 각궁방이 양안에서 자신의 소유지나 수세지 부분을 초록하여 작성한 양안이다. 기본 내용은 군현에 보관된 일반양안에 기초하고 있으며, 양안의 기재 내용을 전재하기도 하고 일부만을 선별하여 초록하기도 하였다. 또 경영 상황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궁방양안은 현존하는 양안 중에 종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궁방양안은 약 800종이며, 시기적으로는 17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퍼져 있다. 이중 내수사 양안이 200여건으로 가장 많고 명례궁이 110여건, 용동궁이 80여건, 수진궁이 70여건, 육상궁이 50여건, 어의궁이 30여건을 차지한다.

현전하는 궁방양안의 대다수는 1907년 황실재산정리와 함께 내장원으로 이관되었다가 조선총독부, 경성제국대학 등을 거쳐 서울대학교로 이관된 것으로 원래의 소장처는 다기하였다.

표지에 기재된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당초 각 궁방에 소장되었던 것(표지에 '宮上', '宮存寘件', '明禮宮上', '明惠公主房上' 등으로 기재) 외에 내수사 소장본('內需司存留件', '移送內需司', '御覽件' 등), 호조 소장본('戶曹上',[31] '戶上'[32]), 토지가 소재한 군현 소장본('官件'[33])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내수사 보관용은 대개 표지에 '御覽'이라고 기재하고 '啓'字 印을 찍었으며 비단으로 장정하고 내지에는 붉은 선으로 관곽을 만들어 어람용 의궤와 같은 형식으로

31) 『安岳郡伏在龍洞宮堰畓改打量後五分之三仍屬同宮五分之二分給民人區別成冊』(奎 20436)
32) 『黃海道載寧郡伏在金貴人房堰畓打量成冊』(奎 18835)
33) 『黃海道庄土文績』(奎 19303) 제32책 1번 문서 『咸豊七年丁巳八月日黃海道長淵海安坊三里及大箕村量案冊』

제작되었다. 어람용 양안은 전체 궁방양안 800여건 중 300건 가량인데, 이중 내수사 양안이 110건 정도며 나머지는 모든 다른 궁방의 양안이다. 따라서 각 궁방의 토지 보유 현황이 국왕에게 보고되고 그 양안이 내수사에 보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조보관용과 군현보관용은 그 사례가 많지 않아 상시적으로 보관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궁방양안의 작성 과정은 철종 12년(1861) 毓祥宮에서 충청감사에게 보낸 다음의 관문을 통해 그 대개를 추론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打量을 위하여 營門에서 吏 한명을 定送하고 또 본래의 각 읍별로 일에 밝은 色吏를 별도로 정하여 宮監을 안동하고 賜牌의 경계에 의거하여 상세히 답험한 후 이른바 泥生으로 진폐된 곳과 양전 후에 作畓한 곳 등 모든 곳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일이 측량하고 長廣尺數, 犯標를 소상하게 현록하여 量案을 성출하고 출급하여 궁감이 어람건을 수정하는 근거로 삼게 할 것"[34]

위의 관문은 육상궁에서 충청도 임천과 한산 소재 전답을 타량하기 위하여 보낸 관문이다. 여기서 營吏와 邑吏, 宮監이 함께 踏驗을 시행하고 長廣尺數, 四標 등을 현록하여 量案을 成出하여 宮監에게 출급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안에 근거하여 변동사항을 현록한 형태의 양안이 등출되었다. 즉, 궁방의 요청과 각읍의 타량을 통해 궁방양안이 작성되었던 것이다.

이 책의 말미에는 궁감이 어람용 양안을 등서하여 답인한 후 監官에게 유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35] 따라서 타량을 시행한 후 육상궁의 감독 하에 어람용 양안을 작성하였고, 이것이 내수사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궁방양안의 작성자[발급자]는 수령이었다. 수령은 답험과 양안 작성을 마친 후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관인을 찍고 마지막에 작성 책임자로 수결을 하였다. 때로는 내수사에서 打量官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수령이 작성 담당자로서 수결을 하고 있다.

궁방양안의 명칭은 '量案'으로 된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打量成冊'으로 되어 있다. 이때의 '打量'은 양전처럼 자호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

34) 『忠淸南道林川郡韓山郡所在毓祥宮田畓量案』(奎 20355) "忠淸監司關文 … 打量次自營門定送一吏 亦自本各邑別定解事色吏眼同宮監 依賜牌境界詳細踏驗後 所謂泥生陳弊量後□□作畓處等諸處 無一遺漏逐庫尺量長廣犯標消詳懸錄成出量案出給宮監以爲御覽件修正之地"

35) 『忠淸南道林川郡韓山郡所在毓祥宮田畓量案』(奎 20355) "辛酉十月日 宮監金昌寬 奉宮令 御覽量案謄書踏印 監官金碩圭處留置"

기존의 토지를 재조사하여 경계를 바로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일부 築垌 등으로 새로 개간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 자호나 지번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방관의 확인을 거쳐 양안이 발급되었다. 따라서 궁방양안은 궁방에서 독자적으로 양전을 시행하여 작성한 양안이 아니라 지방관이 기존의 양안에 의거하여 조사를 시행한 후 사실을 확인해 준 증서에 해당된다.

궁방에서 양안을 등출하는 것은 官을 통해 궁방의 소유지나 수세지를 확인받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양안의 등출이 이루어졌다.

궁방에서 양안을 등출하는 경우는 우선 토지를 새로 획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賜與·賜牌, 折受를 받거나 買得한 경우, 다른 궁방이나 아문에서 移屬받은 경우, 無後奴婢의 記上를 파악하거나 築筒·築堰 등으로 토지를 개간한 경우 등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궁방양안은 대개의 경우 서명에서 買得, 移屬, 賜牌, 折受, 築垌, 無後奴婢記上, 移屬 등 토지를 획득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획득 경위를 밝히는 것은 권리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장치였다.

다음으로는 새로 量田을 시행한 경우다. 양전의 시행으로 자호, 지번, 사표 등 토지를 파악하는 정보가 달라지면 이에 맞추어 소유지나 수세지를 초출한 양안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경자양전 이후에 양안을 새로 등출한 경우들이 상당수 보인다. 전라도 지역의 경우 영조대에 査陳量田을 시행하자 이에 짝하여 각기 새로운 양안을 작성한 것도 볼 수 있다.[36]

한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양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는 정조 7년(1783) 궁방전의 진기 여부를 조사하여 양안을 작성한 경우다. 현전하는 정조대 궁방양안 88건 중 51건이 이 해에 작성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안은 이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변동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재차 작성되었다. 따라서 궁방양안 가운데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한 양안이 여러 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필요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궁방양안은 작성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궁방양안의 기재 양식은 기본적으로는 일반 양안의 기재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를 査正하여 궁방양안을 등출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주

36) 한 예로 보성의 경우 동일 토지에 대해 『全羅左道寶城郡己亥量田內需司位田畓御覽成冊』(1720, 奎 18479), 『全羅道寶城郡所在內需司田畓庫員改打量成冊』(1740, 奎 18481), 『全羅道寶城郡內需司田畓打量成冊』(1757, 奎 18480)이 연이어 작성되었다.

나 작인명을 파악하여 기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재란의 기재 형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궁방의 소유지인 永作宮屯의 경우 주명 대신에 '作人', '作者', '時' 등으로 作人名을 기재하였으며, 궁방에서 수세하는 民結免稅地에서는 양안 상의 주명을 그대로 기재하더라도 '主' 대신에 '時'나 '量'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다. 즉, 궁방양안의 기재 내용은 대개 일반 양안에서 등서하거나 변동 사항을 현록한 형태지만 주명 기재는 변형된 경우가 많다.

궁방양안에는 일찍부터 민간에서 활용된 斗落數와 夜味數를 추가로 기재한 경우도 많다. 현종 9년(1668) 명례궁 양안인 『原襄道原州牧明禮宮屯田畓打量成冊』에서 이미 두락수가 나타나며, 夜味數도 현종 11년(1670) 『慶尙道固城縣明禮宮屬葡萄島田畓改打量成冊』, 현종 12년(1671) 『昌原府龍洞宮屯田畓災陳物故作者石數縣錄成冊』에서 이미 등장한다.

궁방양안에서 일찍부터 作人이나 斗落, 夜味數가 등장하는 것은 양안의 등출이 단순한 등서가 아니라 등출 당시의 농지 경영 양상까지도 포괄한 등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안의 등출은 경영 상태의 확인이라는 기능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인의 양안 등출

개인의 소유지만을 초록한 문서는 관에서 공증을 받아 양안을 그대로 등서한 경우에서부터 사적으로 작성한 전답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기재 양식도 일반양안과 동일한 경우에서부터 '家前畓', '乭金畓'과 같이 소유주가 통상적으로 부르던 토지의 명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경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개인 전답안을 모두 양안의 범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官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사례들로 개인양안의 범주를 제한하고 개인이 양안을 등출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몇가지 사례를 통해 개인이 양안을 등출하는 사유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순조 33년(1833) 張錫源이 徐判書宅에 蘆田을 방매한 매매문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 "도광 13년 계사년 정월 15일 … (蘆田을) 위의 댁에 영영방매하는데 본문기는 전답문서가 함께 붙어 있어서 許給할 수 없으므로 위 노전의 字號卜數成冊을 아울러 영원히 許上하니 후일에 잡담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로 변정할 일"[37]

이 문서는 노전의 본문기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노전의 字號卜數成冊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와 함께 방매자인 張錫源이 같은 해 정월에 작성하여 관의 공증을 받은 『癸巳正月日金海府駕洛帳南伐員蘆田字號卜數成冊』이 남아 있다. 즉 장석원은 관의 공증을 받아 노전이 자신의 소유지임을 증빙하는 자호복수성책을 작성하여 매득자에게 인도한 것이다.[38] 따라서 자신의 소유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안을 등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두달여 후인 3월에도 동일한 노전의 字號卜數成冊을 관에서 발급받은 책자가 전한다. 이 책자는 양안을 그대로 등서한 형태이며 主名만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39] 정황으로 본다면 노전을 매입한 서판서가에서 양안에서 매입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등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례는 토지를 매입한 자가 자신의 소유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양안을 등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고읍면 옥천리에 사는 이진사 댁 노 福三 발괄
>
> 위 사람이 삼가 소지를 아뢰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댁에서 새로 매득한 땅이 동종면, 남면, 서시면 등에 있습니다만 문권이 오래되고 時作이 현란하여 혹 卜數가 혼잡한 것도 있고 혹 경계가 혼잡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전에 呈訴하여 특별히 尺量하라는 제음을 받았습니다. 곳곳을 바로 잡은 후에 田案을 등출해 주실 것을 감히 仰訴하오니 상량하신 후 특별히 成貼하여 憑考하는 자료로 삼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40]

복삼의 청원 이유는 토지를 새로 매득하였으나 문권이 오래되어 時作과 卜數, 경계가 혼란된 곳이 많아 양안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시 측량하여 바로 잡은 후에 양안을 등출해 달라는 것이다. 그 결과로 등출받은 『양근군전안』 역시 양안을 그대로 등서한 형태이며 주명까지 기재된 곳도 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의 확인보다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안을 등출한 것이다.

반드시 새로 매득한 전답이 아니더라도 양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경계를

---

37) 『慶尙道主土文績』(奎 19302) 제11책 문서번호 18 「道光十三年癸巳正月十五日前明文」"道光十三年癸巳正月十五日 … 右宅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田畓文書幷付 故不得許給 右蘆田字號卜數成冊 竝永爲許上 日後有雜談之弊 狀此(文記)卞正事"

38) 『慶尙道主土文績』 (奎 19302) 제11책 문서번호 191, 『癸巳正月日金海府駕洛帳南伐員蘆田字號卜數成冊』

39) 『金海府駕洛帳南伐員蘆田字號卜數成冊』(奎 18569)

40) 『楊根郡田案』(고려대 소장, 내제:道光久年己丑三月日楊根郡田案) "古邑玉泉里居李進士宅奴福三白活/右謹陳所志段 矣宅新買得土在於東終·南面·西始等面 而文券年久時作眩亂 或有卜數之相雜 或有界境之相混 故日前呈訴 特蒙尺量之題敎 逐庫里正後 謄出田案玆仰瞰訴爲白去乎 參商敎是後特爲成帖 俾成憑考之資爲白只爲/行下敎是事/官司主 處分/己丑三月日所志/<제음> 官/成給向事/四月三日"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으로 타량을 시행하고 양안을 등출한 경우도 있다. 務安朴氏 家에서 등출한 「喜庵田案」과 「南初戶石奉田案」에 다음과 같은 完文이 수록되어 있다.

「喜庵田案」(1873)
"도호부가 상고하는 일. 이번에 喜庵齋의 결부를 모으니 해가 오래되어 착란되어 곳곳을 타량하여 사실대로 바로 잡고 한결같이 量案을 따라 成帖하여 주어 후일 빙고하는 신표로 삼을 일"[41]

「南初戶石奉田案」(1782)
"도호부가 상고하는 일
남초 戶 石奉의 전결은 연대가 오래되어 착란되었기 때문에 앙소한 대로 곳곳을 타량하였으나 覆字·器字는 더욱 산란되고 계통이 없어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민원에 따라 개량한다는 法意로 時耕에 준하여 개량하여 바로 잡은 후 等數와 字號는 大帳에 의거하여 시행하오나 年(미상:尺의 오기?)과 卜數는 다른 곳이 없지 않으므로 이제 田案을 수정하여 完文을 성급하니 후일에 빙고하는 신표로 삼을 일"[42]

첫 번째 「喜庵田案」에 수록된 완문은 청원에 따라 타량을 시행하여 경계를 바로 잡고 양안을 등서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두 번째 「南初戶石奉田案」의 경우는 타량을 시행하여 경계를 바로 잡았으나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 당시의 경작 상태[時耕]에 의거하여 결부수를 조정하고 田案을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로 미루어 보면 토지를 査正할 때에는 우선 양안에 기초하여 경계를 바로 잡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 당시의 상황에 기초하여 田案을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등출하여 청원인에게 증빙자료로서 발급해 주었다. 이를 통해 양안이 토지의 경계를 공증함으로써 소유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답의 査正을 위해 打量을 한 사례는 『楊州白石面古靈里田畓改量摠案』(1800)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량 전후의 상황을 함께 기재하고 있는데, 자

41) 「喜庵田案」(1873) "都護府爲相考事 今次集喜庵結卜 年久錯亂 故逐車打量 從實歸正 一遵量案成帖以給 以爲日後憑信事/癸酉三月十四日/行使"(한중연, 『고문서집성』 90 수록)

42) 「南初戶石奉田案」(1782) "都護府爲相考事 南初戶石奉田結 代久錯亂故 依所訴逐車打量 而至於覆字器字 尤爲散亂無統 境界不明是如 以從民願改量法意 準時耕改量厘正而 其等與字號則依大帳施行是乎乃 年與卜數則不無異同 故玆修田案完文成給 以爲後日憑信事 /壬寅 十一月 日/行使(수결)"(한중연, 『고문서집성』 90 수록)

호, 지번, 전품, 主名 등은 변동이 없고 토지의 경계를 반영하는 尺數, 結負數, 四標의 경우만 量과 時로 나누어 그 변동 내역을 기재하였다. 이 때의 '改量'은 전면적인 量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査正'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정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로 양안을 등서하여 소유주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상과 같은 몇몇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양안을 등출한 동기는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서명이 査正冊, 打量成冊, 踏驗量案 등처럼 조사 과정을 전제하고 있거나 尺量色吏나 修正色吏의 명단이 기재된 경우는 대개 위와 같은 査正을 거친 후 양안을 등출한 경우로 보인다.

보다 많은 경우는 「楊州上下道田畓量案」과 같이 서명에 토지의 소재지만 표기하거나 『奴吉奉田案謄書冊』이나 『砥平邑安昌金校埋宅田案』처럼 戶名이나 宅號만을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양안을 등출한 목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관에서 소유 토지의 양안을 등출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은 양안보다는 分財記, 매매문기, 立案, 立旨 등 文書에 기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43] 그런데, 역으로 분재를 받은 후에 관의 공증을 받은 사례로 보인다. 『長連杇夷船坊二里城峴坪李進士宅田案』(甲辰)이 이런 경우다. 이 전안은 경중에 거주하는 洪利川宅과 徐生員宅, 李進士宅이 황해도 장연에 소재한 전답을 평균 분집한 이후 이진사댁에서 所志를 올려 관의 공증을 받아 등출한 양안이다.[44] 이진사댁에서는 분재 문서를 작성하였을 것이 분명하지만 직접 전답안을 작성하여 다시 공증을 받았다. 이 사례는 私文書 외에 관의 공증도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관에서 발급한 개인양안 중에는 소유주가 재지지주인 경우보다는 부재지주, 특히 경중 관료층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재지지주보다는 여러 지역에 토지가 산재한 부재지주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보호받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양안을 등출하여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43) 오인택, 1996 「조선후기의 양안과 토지문서」 『부대사학』 20, 부산대학교 사학과(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2008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재수록) ; 염정섭, 2006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의 토지 소유 관계」 『동아시아근세사회의 비교』, 혜안. 오인택은 『경북지방고문서집성』의 입안, 염정섭은 서울대 규장각 간행 『고문서』의 所志와 입지를 분석하여 고문서를 통해 토지소유권이 증빙되는 양상을 해명하였다.

44) 『黃海道土文績』(奎 19303) 제46책 문서번호 19 『長連杇夷船坊二里城峴坪李進士宅田案』 "京居李進士宅奴仁得 右謹陳所志段 治內杇夷船坊二里城峴坪伏在田七朔耕畓肆拾石落庫乙 矣宅與京中洪利川宅及徐生員宅平均宰割 分爲三衿 各執一分是遣 所分庫員後錄 仰訴爲去乎 □□敎是後 踏印以給 以爲日後憑考之地 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長連官主 處分/<제음>長連官(수결)/甲辰十一月日 後考次依□施行事 初九日"

그런데, 양안 상의 소유주명은 戶名으로 대록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양안의 등출도 많은 경우 戶名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戶名도 관리해야 했다. 호명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경자양안을 등서한 영해 무안박씨가의 『南二度戶山立田案』이 참조가 된다.

『南二度戶山立田案』은 무안박씨가의 소유지를 등서한 등출 양안에 裝紙를 붙여 山立이라는 戶名을 기재한 것이다. 산립이 호명으로 기재된 필지는 양안의 主名이 '朴廷杰奴山立'이나 '山立'으로 되어 있다. 즉 호명인 '山立'은 경자양안 상의 主名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한편 여주이씨 가의 『전답도록』은 경자양안을 그대로 등서한 것이다. 이중 금주는 모두 '世云'으로 되어 있어서 경자양전 당시에 이미 단일한 호명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단일한 호명을 사용한 사례는 고창·고부의 함양박씨가에서 殿佛洞 소재 묘위전 양안의 주명을 모두 '殿佛'로 등재한 사례가 있다.[45]

경상도 용궁현 경자양안의 주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호명을 기재한 田主 927명 중 한 종류의 호명을 사용한 경우가 722명(77.9%), 두종류 이상의 호명을 사용한 경우가 205명(22.1%)로 경자양전 당시에도 단일한 호명을 사용하여 토지를 관리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6]

한편 『楊州白石面古靈里田畓改量摠案』(1800)은 양전 후에 다시 개량하여 양안 상의 사표와 개량 당시의 사표를 함께 기재한 양안이다. 主名은 원 양안의 주명으로 양안 상의 사표에도 동일한 인명이 등장한다. 그런데, 개량 후의 사표인 時에도 양안 상의 主名이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承字 28번田의 時 四標에 등장하는 '守丁'은 양안 상 29번 답의 주명이다. 즉, 양안 상의 주명이 개량 후에도 그대로 戶名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양안에는 '欣男戶', '億山戶'라고 기재한 첨지가 붙어 있는데, 欣男과 億山은 양안상의 주명이다. 이를 통해 양안상의 주명이 장기간에 걸쳐 戶名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안 상의 호명을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사용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양전이 시행되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양전이 자주 시행되면 그때마다 새로운 호명을 등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양안 상의 호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호명은 재산과 더불어 대대로 상속되었던 것이다.

---

45) 『典佛洞量案』(한중연, 『고문서집성』 95 수록)

46) 김건태, 2009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한국사연구』 144, 한국사연구회, 219-227면.

그러나 매매나 상속 등을 통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이런 경우 토지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戶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례는 『禮山縣于可山面量案』(1840)에서 보인다.[47] 이 양안은 기존의 양안을 등서한 형태인데, 주명은 舊와 今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이중 舊主는 이웃한 토지의 四標에 등장하는 인명으로 양안 상의 主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今主는 모두 '卜得'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주명이 다양한 필지들을 단일한 戶名 아래에 등출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된다. 이런 경우 다양한 주명을 새로운 戶名으로 단일화한 후 이를 반영한 양안을 관의 공증과 함께 등출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개인이 등출한 양안 중에는 양안상에 기재되지 않는 야미수나 두락수는 물론 作人까지 기재한 경우도 흔히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순조 20년 改量事目別單에 "본주가 먼 곳에 있고 현재 경작하는 자가 그 노복이 아니면 따로 주가 누구이고 時作이 누구라고 懸錄하라"고 한 조문이 주목된다.[48] 본 연구를 통해 검토한 양안 중 작인이 기재된 경우는 대개 부재지주인 관료층의 소유지가 많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순조 20년 사목 상의 규정은 이전부터 각 군현에서 토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던 관행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두락이나 야미수 역시 관에서 부세 관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역으로 양안을 등출하고자 하는 소유주들이 이를 신고하여 삽입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이상 조선후기 양안의 작성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양안의 범주에는 국가에서 양전을 통해 작성한 군현별 양안과 이를 등출한 파생형태의 양안이 포괄된다. 본고에서는 양안의 등출이 양안의 활용 양상을 반영한다는 인식 하에 양안의 작성 및 등출에 대해 살펴 보았다.

군현별로 작성된 일반양안은 面을 기초단위로 양전을 시행하고 양안을 작성하였

47) 『禮山縣于可山面量案』(1840, 한림대학교 소장)
48) 『순조실록』 권23, 순조 20년 3월 27일(계미) "本主在於遠地 時作者非其奴僕 則別以主某時作某懸錄"

다. 기재 양식에서 몇가지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19세기 언양현의 읍양안에서는 洞量案이 등장하는데, 이는 洞이 공동납의 단위로 기능함에 따라 양안도 동을 단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군현별로 작성된 양안은 장기간의 사용을 위해 보존되었으며,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출하여 사용하였다. 부세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심책은 양안을 그대로 등서한 데 비하여 궁방 등 토지 소유자가 등출한 양안은 기재 양식이 훨씬 다양한 경향을 보인다.

양안은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장부지만 실제의 부세행정은 이를 등서한 행심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안이 면단위로 작성되는 데 비하여 행심책은 대개 洞·里를 단위로 작성되었다. 행심책은 군현에서 면단위로 부세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洞中에서 부세 운영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쪽의 행심책에는 모두 裝紙가 붙어 있으나 작성자나 그 기능은 서로 달랐다. 면단위의 행심책은 官에서 給災와 과세에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 반면 동단위의 행심책은 동중의 부세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궁방양안은 궁방의 요청에 따라 토지 소재 군현에서 답험을 시행한 후 양안을 등출하여 발급한 증서에 해당된다. 소유주인 궁방 보관용 외에 내수사, 호조, 군현 보관용도 작성되었다. 궁방에서는 토지의 획득이나 양전, 토지의 변동, 수세나 수조를 둘러싼 분쟁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양안을 등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인받았다.

궁방양안에는 군현별 양안에 등장하지 않는 作人이나 斗落, 夜味數 등이 등장한다. 이것은 양안의 등출이 단순한 등서가 아니라 등출 당시의 농지 경영 양상까지도 포괄한 등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안의 등출은 경영 상태의 확인이라는 기능도 지닌다.

궁방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관에서 양안을 등출하여 활용하였다. 토지를 매입한 자는 자신의 소유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양안을 등출하였으며, 양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경계를 바로 잡을 목적으로 타량을 시행하고 양안을 등출하였다. 이처럼 관의 인증을 받아 양안을 등출하는 것은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한 것으로 재지지주보다는 여러 곳에 토지가 산재한 부재지주들이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안이나 행심책의 주명은 戶名으로 대록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유권의 관

리를 위해서는 戶名도 관리해야 했다. 많은 지주들은 경자양안의 주명에서 비롯된 단일한 호명을 사용하였으며 주명이 다기한 경우 호명을 단일화하고 이를 증명받는 양안을 등출하였다.

지금까지 양안의 문제는 주로 군현별로 작성된 일반양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양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양안의 활용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행심책, 궁방양안, 개인양안 등이 등출되는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과세자인 국가나 군현에서뿐 아니라 담세자인 토지 소유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양안을 등출하여 활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중에서 부세를 조정하고 소유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주제어 : 양안, 행심책, 궁방양안, 개인양안, 양전

접수일(2010. 8. 31), 심사시작일(2010. 9. 3), 게재확정일(2010. 9. 10)

<Abstract>

Filing of land survey registers(Yang'an/量案), and their utilities

Park, Hyun Soon*

There were general Yang'an registers that were created through the government's land survey projects, but there were also other kinds of Yang'an registers as well, which documented all the information of land units created by individuals and individual houses, general authoritie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Gungbang offices, or even Seoweon and Hyanggyo schools. And there were registers that were created by the land owners as well.

Government-created Yang'an registers were produced mainly for preservation, and copies which were made out of the original documents were the ones that were actually used. Examined in this study is how Gungbang Yang'an registers, Haengshim-chaek documents or personal(individual) registers were created and used in the past. And it will also be emphasized in this article that not only the government or the local authorities who were in charge of levying taxes, but also the land owners who were paying taxes, were well utilizing the Yang'an registers.

Key Words : Yang'an registers(量案), Haengshim-chaek(行審冊), Gungbang Yang'an registers(宮房量案), Personal land registers(個人量案), Land survey(量田)

* Research Fellow,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